

2026년도 제13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성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근무기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8명 (수정6, 중원6, 분당6)	2년	주 35시간	○ 상습불법투기 지역 순찰 ○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대상 적발 (위반확인서 징구) ○ 불법투기 신고 민원 발생 시 현장 방문 후 민원처리 ○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준법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수정·중원구 도시미관과, 분당구 환경자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3명 (수정6, 중원6, 분당11)	2년	주 35시간	○ 현장적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스티커 발부 ○ 증거사진 촬영(차량번호 및 과태료부과 대상 확인) ○ 단속대장 작성 및 결과보고, 민원상담 ○ 주민신고제 앱 신고 업무처리 및 부서장 지시업무 등	각 구 경제교통과
버스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명	2년	주 35시간	○ 버스 민원 접수·처리 및 상담 결과 보고 ○ 버스 불법행위(위반행위, 의견제출, 증빙조사) 관리 및 보조 ○ 버스 등 질서위반 단속(장기 정차, 야간 차고지외 탐샘 주차)	대중교통과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근무기관
버스 레드존 단속 (버스전용정차 구역 CCTV)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주 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레드존 내 정류소 질서 문란 및 주정차 위반 단속 ○ 버스 레드존 내 단속결과 통보 등(각 구청 등) ○ 버스 레드존 민원 접수·처리 및 버스정류장 민원 접수 보조 	대중교통과
택시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8명	2년	주 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민원 접수·처리 및 상담 결과 보고 ○ 관내·외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단속결과 보고 ○ 택시 불법행위(위반행위, 의견제출, 증빙조사, 이첩) 관리 및 보조 ○ 장기정차, 주·정차 위반차량, 질서위반 단속 및 결과 보고 등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2년	주 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 ○ 종사자격 위반 행위 단속(상호 미표시 등) 및 결과 보고 등 	대중교통과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2명 (수정3, 중원4, 분당5)	2년	주 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단속 ○ 현장 순찰 및 민원처리 	각 구 도시미관과

2. 법령 근거

-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공통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주소지 제한: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동 기간 중 말소·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성별: 제한 없음
- 연령제한: 18세 이상
- 기 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개별 요건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 인정: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미인정될 수 있음**)
- 응시자격 기준의 우대사항 증빙자료 제출은 응시자 선택사항이며 증빙자료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임용분야별 응시자격 기준 [필수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민간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합산되지 않음**

□ 응시자격 기준

임용분야 및 직급	응시자격 기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불법투기·교통·건축·광고물 등 일반단속업무 또는 청소 관련 행정업무 경력 【우대사항】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불법주정차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교통, 건축, 광고물 등 일반단속업무 및 교통 관련 행정업무 경력 【우대사항】 ○ 현장단속업무(주말, 공휴일, 조기 및 야간 근무 포함)가 가능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이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정부24(인터넷) 또는 경찰서 발급) ○ 한글, 엑셀, 사진편집 등 컴퓨터 작업이 능숙한 사람

임용분야 및 직급	응시자격 기준
버스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기업 등에서 교통 관련 업무 경력 ※ 업무 특성상 임용기간 출·퇴근 시 지문인식(또는 차세대인사랑 확인)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이에 따른 운전 경력 ○ 현장단속업무(야간·심야근무 포함) 및 민원상담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한글문서, 엑셀, 사진편집 등 컴퓨터 작업이 능숙한 자
버스 레드존 단속 (버스전용정차 구역 CCTV)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기업 등에서 교통 관련 업무 경력 ※ 업무 특성상 임용기간 출·퇴근 시 지문인식(또는 차세대인사랑 확인)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이에 따른 운전 경력 ○ 현장단속업무(야간·심야근무 포함) 및 민원상담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한글문서, 엑셀, 사진편집 등 컴퓨터 작업이 능숙한 자
택시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기업 등에서 교통 관련 업무 경력 ※ 업무 특성상 임용기간 출·퇴근 시 지문인식(또는 차세대인사랑 확인)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이에 따른 운전 경력 ○ 현장단속업무(야간·심야근무 포함) 및 민원상담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한글문서, 엑셀, 사진편집 등 컴퓨터 작업이 능숙한 자
화물자동차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기업 등에서 교통 관련 업무 경력 ※ 업무 특성상 임용기간 출·퇴근 시 지문인식(또는 차세대인사랑 확인)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이에 따른 운전 경력 ○ 현장단속업무(야간·심야근무 포함) 및 민원상담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한글문서, 엑셀, 사진편집 등 컴퓨터 작업이 능숙한 자

임용분야 및 직급	응시자격 기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노점상 법규 위반 단속 업무(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위반단속), 일반 단속업무, 노점상 관련 행정업무 경력 【우대사항】 ○ 노점상 관련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이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 정부24(인터넷) 또는 경찰서 발급) ○ 한글, 엑셀, 사진편집 등 컴퓨터 작업이 능숙한 사람 ※ 업무 특성상 조기,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 가능한 자

4. 시험방법

□ 제1차: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나.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제2차: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가.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평정성적이 최고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 불참자 및 포기자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1. 9.(월) ~ 11. 11.(수)

나. 접 수 처: 성남시청 인사과 인사행정팀(동관 6층)

다. 접수방법: 방문 제출 및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성남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성남시 수입증지)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해당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증빙서류 첨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체국 우편물 접수 마감시간 내 가급적 빠른등기로 송부 권장
- 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우편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인사과 인사행정팀
- 우편봉투 겉면에 ‘성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서류전형 전까지 접수된 응시표는 이메일로 발송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 시험 일정(안)

원서접수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9.(월) ~ 11. 11.(수)(3일간) <small>*우편: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small>	2026. 11. 27.(금) 전 · 후	2026. 12. 2.(수) ~ 12. 11.(금) 전 · 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26. 12. 18.(금) 전 · 후
<p>※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 시행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별 시험일은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6. 가 산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7. 보수 및 복무

□ 보 수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원칙)으로 책정**
- 경력 및 업무난이도 등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여 연봉 책정 가능하되, 연봉 상한액의 범위 이내로 책정

분야	직급	근무시간	보수	비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연28,706천원	
불법주정차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연26,314천원	
버스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연26,314천원	
버스 레드존 단속 (버스전용정차구역 CCTV)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연26,314천원	
택시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연26,314천원	
화물자동차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연26,314천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연31,098천원	

※ 연봉 외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 법령 적용

※ **영리업무의 금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 외의 영리·비영리업무 겸직을 희망할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및 업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할 수 있음

○ 근무실적평가를 통해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 등에 반영할 수 있음

8. 제출 서류

-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아래 순서대로 취합 제출
-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우대사항 중 증빙서류(자격증사본 등)의 형태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여야 함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5급(가급)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해당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방문 접수 시 성남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 면제인증 필요, 증빙서류 첨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성남시수입증지) 납부 후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 후 동봉하여 발송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마.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의견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바.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사.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 5년, 병역사항 표기)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자. (해당자만 제출)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공고문의 필수요건 또는 우대사항의 인정 학위와 본인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첨부

※ 필수요건 또는 우대사항에 특정 전공학과를 요하지 않는 분야의 응시자는 **제출불요**

차.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 고교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학사 학위증명서부터 모두 제출
-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제출

타.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명시된)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별지 제9호 서식

- ※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고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연락처 필수**
- ※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서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이나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함
-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발급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파. 해당자만 제출

- ※ 채용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관련분야 수상실적(개인수상만 인정, 공적내용 기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9. 기타 유의사항

- 가. 성남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나.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 다.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리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라.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차.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 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합니다.
 -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인사과 인사행정팀(☎031-729-2293)	
직무내용 및 근무 등 문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031-729-3195)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기획과 교통지도팀 (☎031-729-3702)
	버스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031-729-3712)
	버스 레드존 단속 (버스전용정차구역 CCTV)	
	택시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화물자동차 질서위반 불법행위 단속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도로과 도로행정팀 (☎031-729-3595)